|  |  |
| --- | --- |
|  | **MARYLAND**Department of Health |

BEHAVIORAL HEALTH ADMINISTRATION

**자발적 입원 신청서**

행동정신과 과장 귀하:

 시설명

본인에게 설명되고 제공된 메릴랜드주 법률, 보건-일반 조항, §10-609(본 양식의 뒷면에 인쇄된
법규 참조)에 따라 정신병 관리 또는 치료를 위해 귀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원할 것을 신청합니다.

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 신청인 성명(정자체) 신청인 서명

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 주소 생년월일

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전화번호 날짜 시간

**의사, 심리학자 또는 정신병원 간호사 증명**

 을 진찰했으며, 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⬜ 이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음

⬜ 상기 정신병에는 관리 또는 치료가 허용됨

⬜ 환자는 치료 요청의 성격을 이해함

⬜ 환자는 시설 내 체류에 계속 동의할 수 있음, 및

⬜ 환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음.

⬜ 메릴랜드주 법률, 보건 직업 조항 §14-305에 따른 면허를 취득했으며 메릴랜드주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함.

⬜ 메릴랜드주 법률, 보건 직업 조항 타이틀 18에 따른 면허를 취득했으며 메릴랜드주에서 심리학 진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함.

⬜ 메릴랜드주 법률, 보건 직업 조항 타이틀 8에 따른 면허를 취득했으며 메릴랜드주에서 정신병원 간호사로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함.

의사, 심리학자 또는 정신병원 간호사 이름(정자체) 주소

의사, 심리학자 또는 정신병원 간호사 서명 전화 번호 날짜 시간

Maryland Department of Health(메릴랜드 보건국)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차별없는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1964년 Civil Rights Act(시민권리법) 6조를 준수합니다. Spring Grove Hospital Center, 55 Wade Avenue, Dix Building, Catonsville, MD 21228의 Behavioral Health Administration(행동건강과) 과장 및 U.S.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, 150 S. Independence Mall West, Suite 372, Philadelphia, PA 19106-3499의 Office of Civil Rights(시민권 사무국) 국장에게 차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자발적 입원에 대한 신청은 본 양식[보건-일반 조항, §10-609(b)(1)]을 이용해야 합니다.

**보건-일반 조항**

**§10-609. 개별 신청**

(a) 일반 조항. — 16세 이상의 환자는 본 섹션에 의거하여 시설에 자발적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 (b) 신청. — 신청인은

(1)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행동정신과에서 요구하는 공식적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,

 (2) 비공식적 입원 요청을 신청해야 한다.

(c) 입원 제한 — 일반 조항. —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본 섹션에 따라 신청인을 입원시킬 수 없다.

 (1) 신청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음

 (2) 상기 정신병에는 관리 또는 치료가 허용됨

 (3) 신청인이 입원 요청의 성격을 이해함

 (4) 신청인이 시설 내 체류에 계속 동의할 수 있음, 및

 (5) 신청인이 퇴원을 요청할 수 있음.

(d) 입원 제한 — 65세 이상의 신청인. — (1) 본 섹션의 하위 섹션 (c)의 제한 조항 외에도,
노인 의학팀이 신청인의 요구 조건에 따른 관리 또는 치료에서 덜 제한적인 형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한 65세 이상의 신청인을 주립 시설에 입원시킬 수 없다.

(2) 노인학 평가팀의 결정에 따라 입원이 거부된 경우, 해당 팀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 (i) 신청인에게 거부 사실을 통지하고,

(ii)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노인학 평가팀이 찾은 덜 제한적인 형식의 관리 또는 치료를 받도록 장애인을 지원함.

**§10-803. 자발적 입원.**

(a) 비공식적 요청. —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원한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, 입원 상태가 비자발적 입원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언제든 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다.

(b) 입원 상태가 비자발적 입원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, 공식적 서면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요청한 후 3일 이상 퇴원을 연기할 수 없다.

(c) 공식 신청 — 미성년자. — 입원 상태가 비자발적 입원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,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입원한 미성년자에 대해 입원 신청인이 퇴원을 요청한 후 3일 이상 퇴원을 연기할 수 없다.